

건축학과 건축학 전공 교수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심사 연구실적물 규정

제정 2013. 3. 19.
개정 2018. 8. 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학 전공 교수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심사에 적용되는 연구실적물을 규정하고, 건축학 전공 교수의 국제적 수준 연구업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적 연구 업적물) 공과대학에서 규정하는 국제적 연구업적물에 추가하여, 다음의 업적을 건축학 분야의 국제적 수준 연구 업적물로 인정한다.

- ① SCI급 (A&HCI, SCIE, SSCI 등)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명기된 연구논문, 비평, 설계작품
- ② 국제적으로 인정된 출판사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출판된 전공도서 또는 전공도서의 장(Book Chapter)으로서 학과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 ③ 다음에 정하는 학회지에 게재된 제1저자나 혹은 교신저자로 명기된 연구논문
 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발행
 2. 대한건축학회 영어 논문집 (Architectural Research) 대한건축학회 발행
- ④ 다음에 해당하는 설계(계획)작품
 1.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2.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발행되는 해외 해당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된 작품
 3. 공인된 국제설계경기 및 광역시 및 도 이상의 정부기관이나 전국규모의 공공단체가 주관한 설계경기의 당선작품 또는 수상작품.
 4. 광역시 및 道 이상의 정부기관이나 전국규모의 공공단체가 주는 상을 수상한 작품
 5. 유수한 해당 전문지 또는 유수한 해당 전시단체가 설계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하여 게재 또는 전시한 작품으로서 학과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작품.
 6. 커미셔너나 큐레이터로 기획한 국제 전시회

제3조 (국제적 업적 장려방안) 건축학 전공교수의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제적 업적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둔다.

- ① 제2조 ③항에 실린 연구논문의 업적건수는 50%로 산정 한다.
- ② 공과대학 국제적 수준 연구 업적물 또는 제2조의 ①항, ②항, ④항에 해당하는 업적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는 100%,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하는 경우는 200% 이상 있어야 한다.

제4조 (국제적 설계작품 업적환산율) 제2조 ④항의 설계작품의 국제적 연구 업적물 인정과 관련하여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과인사위원회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설계작품업적물 기준일) 제2조의 ④항에서 정한 설계작품의 업적물 기준일은 수상일(또는 게재일 및 전시일)로 하며, 하나의 작품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